

대학원 내 연구윤리 측면에서의 활용 범위

관계 법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4.3.24, 교육부 훈령 제 60호)

- 학술진흥법 제15조에 의거, 연구윤리의 기본적 원칙과 방향을 제시
- 연구윤리 지침 구체성 확보방안을 위해 개정 중

개정 내용

제3조 (적용대상 및 방법)	제2장 제6조 (대학등의 역할과 책임)	제3장 제12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학위논문발표, 대학 등 자체에 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 대상이 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부정행위 판단 및 검증기구 설치 운영 • 연구윤리의식 확산을 위해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 실시 명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개념 정의 명확화 • 표절에 포함될 수 있는 전형적인 판단기준 제시

연구윤리 부정행위

1. 위조: 데이터를 허위로 만들어 냄
2. 변조: 인위적 조작, 데이터 임의 변형 및 삭제
3. 표절: 출처표시 없이 사용, 재인용 출처
4. 중복게재: 자기표절, 이중게재
5. 부당한 저자 표시
6. 기타: 출처표시의 부정확, 출처와 참고문헌의 불일치

교육부 대학원 질 관리 방안

대학원 학사 및 학위 관리 강화(계속)

- 학술 석·박사 및 전문박사 논문제출 의무화, 논문제출 시 엄격한 심사 실시
- 학술대회 발표 또는 학술지 게재 등 논문제출 자격 관리강화
-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학위 취소근거가 모든 학위로 확대(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개정 15.03.17 시행)
- 연구윤리위원회 운영, 논문작성 시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제출
- 논문제출 시 표절검사결과확인서 사전제출 등 연구윤리 확보

대학원 정보공시 강화

- 대학원생 연구실적 및 연구윤리규정 항목 신설

대학원 평가 체제 마련

- 대학원 학위수여 및 연구윤리, 연구성과 등 중점개선 사항 파악

대학원 내 올바른 활용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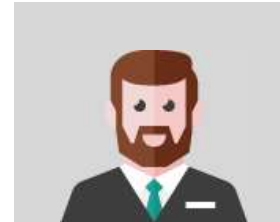


문서작성자

대학원생, 교원, 교직원 등

- 작성 중 검사(여러 번)
- 올바른 출처표시
- 수정 및 재검사
- 최종완성
- 표절검사결과확인서

작성자 스스로 표절 검사 점검
작성과정에서 지속적인 표절검사
출처확인 및 올바른 출처표시
표절 및 대필의 위험성 환기



평가자 및 지도자

교원, 교직원 등

- 표절검사결과 확인서 check
- 피드백
- 평가자 확인

교수 업무 효율화
지도교수의 책임의식 제고
평가자의 심도 있는 검토 유도
객관적 평가

자가점검을 거친 논문 제출 프로세스 확립

Copy Killer CAMPUS

논문 작성자 자가점검

- 작성 중 검사
- 올바른 출처표시
- 수정 및 검사
- 최종완성
- 표절검사결과확인서

논문접수처 제출

- 심사논문 접수
- 표절검사결과확인서
- 연구윤리준수 확인서

지도교수 확인

- 표절검사결과 확인서 check
- 피드백
- 수정 및 점검
- 지도교수 확인란 서명

서비스 기능 - 결과보고서 확인 기능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3가지 형태

① 기본보기 : 검사 결과 및 비교문서 정보 출력

② 요약보기 : 내 문서에서 표절의 심영역만 비교하여 출력

③ 상세보기 : 내 문서 전체와 비교된 상세한 출처 내용을 모두 출력

문서명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비율
문서명	10%	20%	30%	40%	50%	60%

문서명	비율	비율
문서명	10%	20%

[참고] 표절률에 따른 학내 처리 가이드 예

- (적용) 학위청구논문 및 학술논문, 대학원생의 교과이수 등을 위한 과제물
- (활용) 학생 및 연구자는 본인의 논문 등을 카피킬러캠퍼스로 자율 검사하고 유사도 검사 등급을 확인

- ▶ 양호 수준 : 0%이상 ~ 10% 미만
- ▶ 유의 수준 : 10%이상 ~ 15% 미만(대학원의 과제물은 10%이상~20%미만)
- ▶ 의심 수준 : 15% 이상 ~ 20% 미만(대학원의 과제물은 20%이상~30%미만)
- ▶ 위험 수준 : 20% 이상(대학원의 과제물은 30%이상)

- (자율조치) 유사도 검사결과에 의거 자율조치(학생)
 - 양호수준 : 연구윤리 위배사항 검토 후 이상이 없을 경우 활용
 - 유의수준 : 양호수준으로 낮추거나 본인의 검토내용을 기술하여 활용
 - 의심수준 : 양호수준으로 낮추거나 지도교수 및 평가자의 검토내용을 기술하여 활용
 - 위험수준 : 수준을 낮추어 활용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시 활용 사례(1)

□ 표절방지프로그램 이용 방법

- 운영현황 : 학사포털에서 '카피킬러캠퍼스(표절예방프로그램)' 과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학교 대학원생 이상 연구진을 대상으로 이용자격 부여

□ 행정 사항(학과 및 대학)

- 표절예방프로그램 자가 점검 사항 철저히 안내 및 홍보
- 2015년 제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대상자 접수 시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제출 여부 반드시 확인

2. 제출사항

- 1) 논문게재신청서: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첨부파일 1페이지)
- 2)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작성(첨부파일 2페이지)
- 3) 논문원고(원고작성요령 미준수시 반려될 수 있음에 유의)
- 4) 표절검사(카피킬러) 결과 확인서: 표절을 허용 범위 10% 미만
- 5) 심사료: 5만원 / 납입계좌: 우리은행 126-000033-18-206 (학)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시 활용 사례(2)

□ 연구윤리 과목을 논문제출 자격요건 **필수과목으로 개설**

※ 별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알려드릴 예정임

□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 검증 결과물 **사전 제출 및 심사 의무화**

◦ 본교 도서관 홈페이지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 제공 : 카피킬러캠퍼스

◦ 학생은 심사용 논문 제출 시 논문표절예방프로그램에서 출력한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제출

◦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시 위 1) 또는 2)를 심사하여 표절여부를 판단

※ 심사위원은 위 2) 제출자에 대하여 필요시 1)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검증 결과물 심사시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드시 세부심사를 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시 활용 사례(3)

4. 표절(유사도) 검사 결과의 활용 및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 제출

- 가. 시스템의 유사도 검사 결과만으로는 표절 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표절 검사를 시행하는 것은 학위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논문 제출 후 표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용 및 참고문헌 명시 등 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 나. 연구자는 유사도 검사 결과 보고서(유사성 보고서)를 출력하여 발견된 유사 부분(번호와 하이라이트로 표시됨)을 필요에 따라 지도교수와 논의하여 보완하고, 지도교수는 유사도 검사 결과를 통한 논문 수정, 보완 내용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의 의견을 작성함.
- 다. 유사도 검사는 논문심사 전 실시하여 완성도를 높인 상태에서 논문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동일한 논문에 대해 여러 번의 검사가 가능하므로 논문을 수정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학위논문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는 논문심사 시 첨부하여 학과로 제출함.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시 활용 사례(4)

- 「학위수여규정」 제15조(논문제출서류) 개정(안) - 추후 개정 예정

현 행	개 정(안)
<p>제15조(논문제출서류) ① 논문의 제출 및 심사에 의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2. 지도교수 추천서 3.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p>② 생략</p>	<p>제15조(논문제출서류) ① 논문의 제출 및 심사에 의하여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고 소정의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심사용 논문(석사 3부, 박사 5부) 2. 지도교수 추천서 3.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u>4. 표절검사 결과확인서</u> <p>② 생략</p>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시 활용 사례(5)

6. 최종 논문 제출

가. 제출기간 : 2016. 01.13.(수) ~ 01.15.(금)

나. 제출서류

- 석사학위 논문제출(서식2)
- 석사학위 논문 요약서(서식3)
- 연구윤리 준수확인서(서식4)
- 카피킬러 캠퍼스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학생들이 자신의 논문을 점검 후 지도교수께 확인란에 날인하고 본인 서명한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 필히 제출 할 것 샘플 참조》
- 석사학위논문 1부[심사위원 인준날인 된(복사본 안됨) 하드커버 또는 소프트커버]
 - ※ 논문요약서는 논문초록 내용임.(국문 2,000자 내외 워드로 작성)
 - ※ 논문제목을 변경할 시 학생 본인이 학사정보에서 수정 할 것
 - ※ 모든논문제출자는 서식2,서식3, 서식4의 논문제목이 모두 일치해야 함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시 활용 사례(6)

제3조(논문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 ① 제2조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본교 학위수여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본인이 작성한 논문을 본교가 도입하여 운영하는 '논문 유사도 검사시스템'으로 자율 검사하여 「유사도 검사 등급」을 확인 후 논문 유사도 검사 결과보고서를 대학원 교학과에 학위청구논문 종합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유사도 검사등급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양호 수준 : 0%이상 ~ 10% 미만
2. 유의 수준 : 10%이상 ~ 15% 미만
3. 의심 수준 : 15% 이상 ~ 20% 미만
4. 위험 수준 : 20% 이상

③ 논문 검사 시에 검사조건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비교범위 : 현재첨부분서, 카피킬러 DB
2. 검사설정 : 인용/출처 표시문장 제외, 제목/목차/참고문헌 제외
3. 표절기준 : 6어절 이상 일치, 1문장 이상 일치

제5조(논문 유사도 검사결과 확인) ① 제2조 제1호에 의거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한 대학원생이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4조에 따라 자율 조치한 논문유사도 검사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자는 이의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심사결과를 학위청구논문 종합심사 결과보고서에 기술하여야 한다.

② 논문 유사도 검사결과가 20%가 넘는 학위청구논문을 논문심사위원들이 판단하여 통과시켜 줄 경우에는 논문심사위원장이 별지의 "학위논문 유사도 확인서"에 관련 의견을 작성하여 해당 논문이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시 활용 사례(7)

논문 표절검사 서비스 활용지침(안)

제정 2015.00.00.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OO대학교(이하 “본교” 라 한다)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의거 본교 학위청구논문 및 과제물(이하 ‘연구물’ 이라 한다) 등에서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이 적용되는 연구물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본교 대학원학칙 제00조와 대학원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제0조에 따른 학위논문
2. 본교 대학원학칙 제00조 내지 제00조와 관련한 대학원생의 교과이수 등을 위한 과제물

제3조(논문 표절검사 서비스 활용) ① 제00조의 대상이 되는 학생은 본교 연구물에서의 연구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본인이 작성한 연구물을 제00조에 의거 본교가 도입하여 운영하는 ‘논문 표절검사 서비스’ 로 자율 검사하여 「표절(유사도) 검사 등급」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른 표절(유사도) 검사등급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양호 수준 : 0% 이상 ~ 10% 미만
2. 유의 수준 : 10% 이상 ~ 15% 미만(대학원의 과제물은 10%이상~20%미만)
3. 의심 수준 : 15% 이상 ~ 20% 미만(대학원의 과제물은 20%이상~30%미만)
4. 위험 수준 : 20% 이상(대학원의 과제물은 30%이상)

제4조(검사 등급에 따른 자율조치) 제3조에 따라 연구물의 표절(유사도) 검사등급을 확인한 학생은 본교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 제00조에 따른 연구자의 진실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제00조 제00항에 의한 검사 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율 조치한다.

1. 양호 수준 : 연구윤리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한하여 검사결과를 연구물에 첨부하여 활용
2. 유의 수준 :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검사결과를 양호 수준으로 낮추어 활용하거나, 검사결과가 유사도 검사시스템의 기술

적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본인의 검토 내용을 검사결과에 기술하여 활용

3. 의심 수준 :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검사결과를 양호 수준으로 낮추어 활용하거나, 검사결과가 유사도 검사시스템의 기술적 한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지도교수의 검토를 받아 검토내용을 검사결과에 기술하여 활용

4. 위험 수준 : 연구윤리에 위배될 수 있는 의심 부분을 수정하고 재검사를 수행하여 제1호 내지 제3호의 수준으로 낮추어 활용

제5조(논문 표절검사 결과확인서 제출) ① 제2조 제1호에 의거 학위청구논문을 작성한 대학원생이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청구할 경우에는, 반드시 제4조에 따라 자율 조치한 논문 표절검사 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학위청구논문의 심사자는 이의 적정 여부를 심사한 [별지 제1호 서식]을 ‘석·박사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 외에 학생의 과제물을 제출받는 지도교수는 논문표절 방지 및 연구윤리의 지도를 위하여 학생이 제4조에 의거 자율 조치한 논문 표절(유사도) 검사결과에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논문 표절검사 서비스 도입 및 운용) ① 제3조에 따른 논문 표절검사 서비스의 활용을 위하여 총판대학원장은 본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용하며 본교 학생 및 교직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 기타 논문 표절검사 서비스의 활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대학원 학위논문 제출시 활용 사례(8)

[별지 제1호 서식]

논문 표절검사 서비스 검사결과 및 검토내용

구 분	<input type="checkbox"/> 학위논문 <input type="checkbox"/> 학내 과제물	
논문/과제명		
작 성 자	전공 : 학번 : 성명: (서명)	
검사결과	검사등급 (표절률)	00 %(00 수준)
	유의 수준인 경우 검토내용 (본인기술)	
	의심 수준인 경우 검토내용 (논문지도교수)	
검토 확인결과 (논문지도교수 작성)	확인자 (서명)	
	검토 확인내용 :	
첨부물	논문 표절검사(카피킬러) 결과확인서(발급형태 : 기본보기) 1부 첨부	

* 작성요령 : 1. 구분 : 해당 종류에 표시 기입, 2. 검사결과 기술 : 필요시 별지 사용

OO대학교 대학원장 귀하

(서식4)

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논문제출자	과정	전공	학번	성명
지도교수	전공		성명	
논문제목	국문			
	영문			

본인은 학위논문의 제목, 목차, 내용 등의 작성에 있어 논문대필 등의 부정
한 행위를 하지 않고 연구윤리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에 연
구윤리 준수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어떠한 제재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인)

확인자 : 지도교수 (인)

교육대학원장 귀하



Thank you

카피킬러가 올바른 글쓰기를 위해 표절예방을 책임집니다.

Copy Killer  CAMPUS